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43
------	-----

2011. 7. 7.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1년 6월 10일

나.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다. 회부일자 : 2011년 6월 15일

라.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1년 6월 28일)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보류)

【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2011년 7월 7일) 상정, 의결(수
정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산업 육성·지원 업무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경제진흥본부로 이관하고,
- 한시기구인 G20정상회의지원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임.

나.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 의 : 관련 실·국·본부와 각각 합의하였음

3.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박노수)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조례개정안은 문화산업 육성업무를 8대 신성장동력산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사업추진력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문화산업 육성·지원 업무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경제진흥본부로 이관하고, G20 정상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해 2010.12.31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해오던 “G20 정상회의 지원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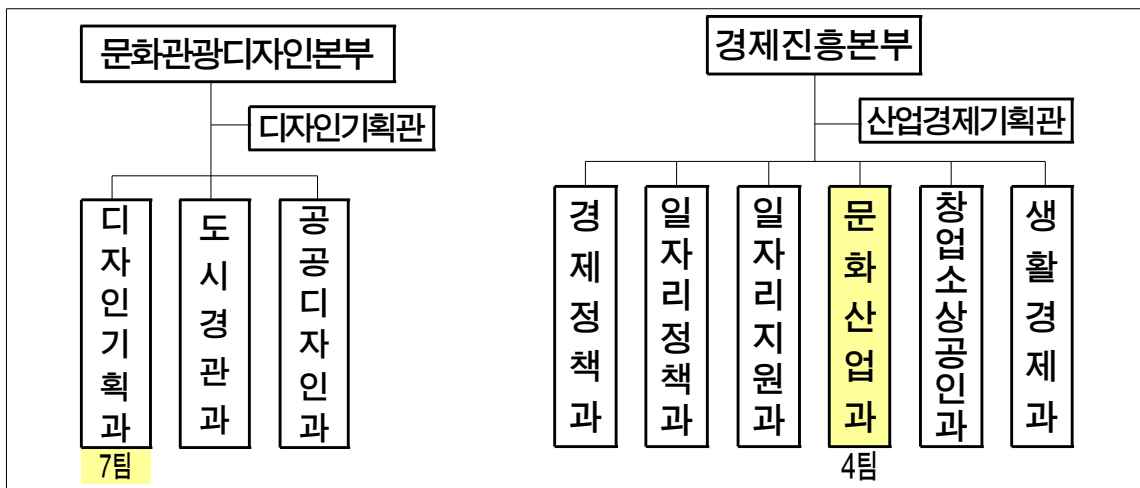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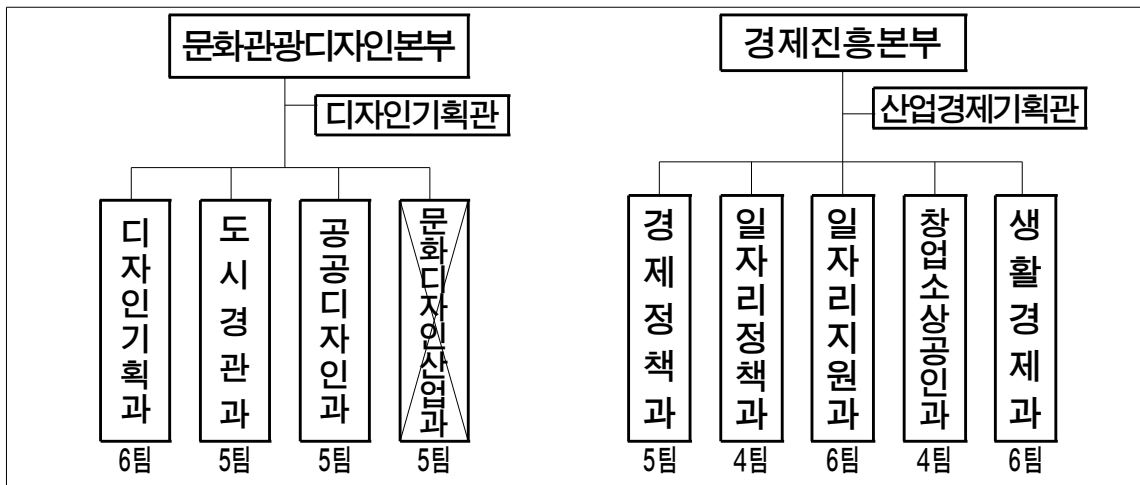
나. 문화산업 육성·지원 업무 이관(안 제6조 및 제7조)

-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8대 신성장동력산업(① IT융합, ② 바이오메디컬, ③ 녹색산업, ④ 디지털콘텐츠, ⑤ 디자인·패션, ⑥ 비즈니스서비스, ⑦ 금융, ⑧ 관광·MICE¹⁾)과 연계하여 산업통상진흥원(SBA)에서 집행토록 문화콘텐츠·게임·영상업무 등 4개 팀을 경제진흥본부 아래 문화산업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이관하는 것임.
- 한편, 디자인산업 지원업무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기획과에 두고 공공디자인, 경관디자인과 연계하여 디자인 정책기능과 연계추진하려는 것임.

1) MICE산업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네 분야를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 산업임. MICE산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관광산업과 다름.

즉, 기존 관광이 B2C(Business-to-consumer)라면 MICE산업은 B2B(Business-to-Business)다. 이렇듯 기업 대상이라는 점 때문에 MICE산업 부가가치는 일반 관광산업보다 훨씬 높다고 함.

< 경제진흥본부에 문화산업과 신설 >



- 이는, 문화산업 육성·지원 업무에 대해 기존의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문화디자인산업과에서 관장해야 하는지, 경제진흥본부 아래 신설되는 문화산업과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됨.
- ‘문화산업업무’를 경제진흥본부에 이관해야한다는 의견은 경제진흥본부 아래 문화산업과를 두어 디지털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등은 창업, 기술개발, 자금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연계할 경우 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사업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관련 산업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주장임.
- 이에 반해, ‘문화산업업무’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관장해야한다는 의견은 최근의 글로벌트렌드는 문화유적 뿐만 아니라 한류 등으로 대변되는 다양한 문화컨텐츠와 문화, 관광, 디자인 등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창출될 수 있다는 주장임.

다. G20정상회의 지원단 폐지(안 제14조 및 제19조)

한시기구 구성 및 기능

○ 기 구 명 : G20 정상회의 지원단(3급)

- 지원단장 : 3급 한시기구로 운영
- 실무조직 : 기획지원반, 행사지원반

○ 존속기한 : 2010. 12. 31까지

○ 인 력 : 16명(1단 2반 4팀)

○ 주요기능

- 회의장 등 주요시설 점검, 문화환경·숙박·교통·안전대책 등 지원기획 총괄
-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

- G20 정상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국 소관으로 2010.12.31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해오던 G20정상회의지원단(1단, 2반 4팀, 총16명)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이에 따른 사무기구와 사무분장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라. 다른 조례의 개정(안 부칙 제2조)

- 민선5기 조직개편('10.9.27)에 따른 타 조례의 기구명칭 변경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외 47건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은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행정의 일관성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개정하는 만큼, 각 실국 명칭 변경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문화산업 육성·지원 업무를 기존의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문화디자인산업과에서 관장토록 할 경우, 이 사항에 동의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답변 : 보다 더 세밀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한다고 생각되며 의원님들의 의결사항에 동의합니다.

5.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문화산업 육성·지원 업무에 대해 기존의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문화디자인산업과에서 관장해야 하는지, 경제진흥본부 아래 신설되는 문화산업과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려는 것임.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제6조제9호를 현행과 같이 “문화디자인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존치토록 하며, 신설하려는 제7조제5호를 삭제함(안 제6조 및 제7조).

6.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일자 : 2011년 7월 7일

발 의 자 : 재정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문화산업 육성·지원 업무에 대해 기존의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문화디자인산업과에서 관장해야 하는지, 경제진흥본부 아래 신설되는 문화산업과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내용

- 가. 제6조제9호를 현행과 같이 “문화디자인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존치토록 하며, 신설하려는 제7조제5호를 삭제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9호를 현행과 같이 “문화디자인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5호 신설조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동조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2조제9항 하단부분에 “문화국장”을 “산업경제기획관”으로 한다’ 를 “문화국장”을 “문화관광기획관”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조례안	개정 조례안	수정 조례안
제6조(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문화디자인산업 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문화관광디자인본부) ----- -----. 1. ~ 8. (현행과 같음) 9. 디자인산업 ----- -----	제6조(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제7조(경제진흥본부) 경제진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신설> 5. ~ 11. (생략)	제7조(경제진흥본부) ----- ----- - 1. ~ 4. (생략) 5. 문화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 12. (현행 제5호에서 제11호까지와 같음)	제7조(경제진흥본부) 경제진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 11. (현행과 같음)
제14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G20정상회의지원단 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행정국) ----- ----- -----.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개정안과 같음)
제19조(한시기구) G20 정상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국에 한시적으로 G20 정상회의지원단을 두며, G20 정상회의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삭제>	(개정안과 같음)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영상산업 업무소관 국장”을 “영상산업 업무소관 기획관”으로 하고, “문화국장”을 “ 산업경제기획관 ”으로 한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영상산업 업무소관 국장”을 “영상산업 업무소관 기획관”으로 하고, “문화국장”을 “ 문화관광기획관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홍보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1호 및 제3호 중 “홍보기획관”을 “홍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제8조제2항 중 “홍보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송지원반란 중 “보좌관 : 교통정책담당관”을 “보좌관 : 교통정책과장”으로, 반원은 “교통정책담당관”을 “교통정책과”로, “버스정책담당관”을 “버스관리과”로, “운수물류담당관”을 “택시물류과”로 “주차계획담당관”을 “주차계획과”로 한다.

동표 건설복구지원반란 중 “반장 : 시설안전국장”을 “반장 : 시설안전기획관”으로, “보좌관 : 건설총괄부장”을 “보좌관 : 도시안전과장”으로, 반원은 “도로행정담당관”을 “도시안전과”로, “도로계획담당관”을 “도로행정과”로, “도로관리담당관”을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관리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부”를 “교량관리과”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를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로 한다.

동표 의료구호지원반란 중 “반장 : 복지국장”을 “반장 : 복지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반원은 “위생과”를 “공중위생과”로, “보건정책담당관”을 “복지정책과”, “보건정책과”로 한다.

동표 보급(급식)지원반란 중 “반장 : 경제진흥관”을 “반장 : 산업경제기획관”으로, “보좌관 : 기업지원담당관”을 “보좌관 : 경제정책과장”으로, 반원은 “기업지원담당관”을 “경제정책과”로, “생활경제담당관”을 “생활경제과”로, “일자리정책담당관”을 “물관리정책과”로 한다.

동표 홍보지원반란 중 “반장 : 홍보기획관”을 “반장 : 홍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보좌관 : 홍보담당관”을 “보좌관 :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반원은 “홍보담당관실”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언론담당관실”을 “언론행정담당관”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국장”을 “문화관광기획관”으로 하며, 제24조제2항 중 “디자인기획담당관”을 “디자인기획과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제9조제3항 중 “공공디자인담당관”을 “공공디자인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영상산업 업무소관 국장”을 “영상산업 업무소관 기획관”으로 하고, “문화국장”을 “문화관광기획관”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경쟁력강화본부 관광진흥담당관”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국장”을 “문화관광기획관”으로, 제7조제3항 중 “문화과장”을 “문화정책과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진흥관”을 “산업경제기획관”으로, 제5조 중 “기업지원담당관”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제진흥관”을 “산업경제기획관”으로, 동조 동항 제2호 중 “기업지원담당관”을 “창업소상공인과장”으로, 동조 동항 제3호 중 “자금지원담당사무관”을 “소상공인지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진흥관”을 “산업경제기획관”으로, “기업지원담당관”을 “창업소상공인과장”으로, “생활경제담당관”을 “생활경제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제2호 중 “경제진흥관”을 “산업경제기획관”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복지국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경제진흥관”을 “산업경제기획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생활경제담당관”을 “생활경제과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제진흥관”을 “산업경제기획관”으로 하고, 제13조제6항 중 “생활경제담당관”을 “생활경제과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제진흥관”을 “산업경제기획관”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경쟁력강화본부 생활경제담당관”을 “경제진흥본부 생활경제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가목의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나목의 “경쟁력강화본부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하며, 동조 제2호나목의 “국제협력담당관”을 “국제협력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경쟁력강화본부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가족보건기획관”을 “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보건정책담당관”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하며, 제5조 중 “보건정책담당관”을 “보건정책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국장, 정책관,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본부장,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정책담당관”을 “건강증진과장”으로, “보건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을 “건강증진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중 “위생과장”을 “공중위생과장”으로, “위생과”를 “공중위생과”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2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제9조제1항 중 “간사는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담당관, 서기는 버스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을 “간사는 도시교통본부 버스관리과장, 서기는 버스관리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 행정(2)부시장, ”를 “행정(1)부시장”으로, “복지국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㉘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교통운영담당관”을 “교통운영과장”으로 한다.

㉙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2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제1호 중 ‘주택국장’을 ‘주택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환경기획관’을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㊱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 중 “균형발전본부장”을 삭제하고, “주택국장”을 “주택본부장”으로, “물관리국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㊲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환경기획관”을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자원순환담당관”을 “자원순환과장”으로, 동조 제2항 중 “자원순환담당관”을 “자원순환과”로 한다.

㊳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환경기획관”을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㊴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동조 동항 제2호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㊵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㊶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언론담당관”을 “언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㊷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중 “방재기획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한다.

㊸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의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하고, “도로기획관”을 “시설안전기획관”으로 한다

㊹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의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가로환경추진개선단장”을 “시설안전기획관”으로 한다.

㊺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도시교통본부장과 물관리국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동조 동항 제1호의 “도시교통본부장 : 서울특별시도·자동차 전용도로상의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관리시설물 등”을 “도시안전본부장 : 서울특별시도·자동차 전용도로상의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하천 및 하천시설물, 하수도시설물, 하천복개구조물로”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의 “물관리국장 : 하천 및 하천시설물,

하수도시설물, 하천복개구조물”을 “도시교통본부장 : 교통안전·관리 시설물 등”으로 하며, 제18조제 1항의 “도시기반시설본부”를 “도시안전본부”로 하고, 동조 제2항의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로교통사업소장”을 “도시안전본부장, 도로사업소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시설물유지관리내역란 및 관리자란 중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도시안전본부장”으로, “도로교통사업소장”은 “도로사업소장”으로, 비고 1의 “물관리국장”과 “도시교통본부장”은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④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의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④①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도로교통사업소장”을 “도로사업소장”으로 한다.

④②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의 “맑은환경본부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④③ 서울특별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의 “맑은환경본부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④④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의 “복지국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하고, 나목의 “물관리국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의 “물관리국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복지국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제1호의 “도로관리담당관”을 “도로관리과장”으로, “방재기획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한다

④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주택국장”을 “주택본부장”으로 한다.

④⑥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주택국장”을 “주택본부장”으로 한다.

④⑦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⑧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물관리기획관”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제14조제2항 중 “환경행정담당관”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5. (생략)</p> <p>6. G20정상회의지원단 업무에 관한 사항</p> <p>제19조(한시기구) G20 정상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국에 한시적으로 G20 정상회의지원단을 두며, G20정상회의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3. (생략)</p>	<p>제14조(행정국) ----- -----.</p> <p>1. ~ 5.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p> <p>①~㉘ (생략)</p>